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205055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205055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가합3399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가합33997 판결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과 피고 D 사이의 2013. 3. 12.자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A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3. 12. 접수 제11764호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A과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2. 10. 29.자 매매예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3. 20.자 매매계약,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3. 5. 20.자 매매계약은 각 105,578,796원 및 그 중 103,041,232원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105,578,796원 및 그 중 103,041,232원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3. 7. 30. 대전지방법원 2013회단2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3. A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인 2013. 9. 4.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10. 30. '이 사건 소는 채무자인 A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관리인이 아닌 일반채권자가 개별적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라.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은 2015. 2. 3. A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계인 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아니하는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하였고, 2015. 2. 10.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회생계획안이 없다는 이유로 A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 2015. 2. 26.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회생채무자 A의 법률상 관리인 A(이하 '법률상 관리인'이라 한다)이, ① 피고 B를 상대로 '별지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9. 체결한 매매예약을 부인하고, 피고 B는 법률상 관리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3. 2. 8. 접수 제5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3. 5. 16. 접수 제224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3. 5. 29. 접수 제246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여 제기한 소(대전지방법원 2014가합2802호)에서 2014. 10. 30. 법률상 관리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② 피고 B, D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회생채무자 A이 2013. 3. 12. 피고 D과 체결한 매매예약을 부인하고, 회생채무자 A에게,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3. 12. 접수 제117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B는 위 지원 2013. 6. 26. 접수 제342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여 제기한

소(대전지방법원 2014가합4037호)에서 2015. 1. 14. 피고 B에 관하여는 법률상 관리인 패소판결이, 피고 D에 관하여는 법률상 관리인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288조 제4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후의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의 회생절차의 폐지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의 회생절차의 폐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나 채권자의 권한이 소급하여 회복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도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한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소송절차의 중단¹⁾은 해소되어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있고, 소송절차가 중단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진행되어 버린 소송행위가 있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러한 법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비로소 소송이 제기되어 소제기 자체가 위법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의 회생절차의 폐지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법 제288조 제4항과 같은 규정이 없고, 채무자의 회생이 좌절됨으로써 이제는 부인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의 충실을 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은 관리인 승소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실체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관리인 패소의 확정판결 역시 채권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실체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인 2013. 9. 4.에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나,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15. 2. 10. A에 대한 회생절차를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폐지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이 2015. 2.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제기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마.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고,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지 않다면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하지 않고 제1심으로 환송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418조3) 본문에 따라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제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4).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박해빈 판사 김재형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평택시 E에 있는 F건물

[도로명 주소] 평택시 G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지하2층 지상3층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지하1층 7,917.21㎡

지하2층 7,316.55㎡

1층 6,508.23㎡

2층 6,541.83㎡

3층 6,542.1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19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5.8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평택시 E 대 9,34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348분의 26.601

2. 1동의 건물의 표시

당진시 H에 있는 I건물

[도로명 주소] 당진시 J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9층 업무시설

지4 주차장, 기계실 517.00㎡

지3, 지2 각 주차장 1,424.01㎡

지1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1,424.01㎡

1층 내지 4층 각 상점 1,283.95㎡

5층 내지 8층 각 사무소 1,283.95㎡

9층 치과병원 1,058.83㎡

옥탑1 옥탑, 엘리베이터기계실 107.8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51.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당진시 H 대 2,18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206분의 39.3228

3. 1동의 건물의 표시

당진시 H에 있는 I건물

[도로명 주소] 당진시 J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9층 업무시설

지4 주차장, 기계실 517.00㎡

지3, 지2 각 주차장 1,424.01㎡

지1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1,424.01㎡

1층 내지 4층 각 상점 1,283.95㎡

5층 내지 8층 각 사무소 1,283.95㎡

9층 치과병원 1,058.83㎡

옥탑1 옥탑, 엘리베이터기계실 107.8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의원 129.3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당진시 H 대 2,18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206분의 43.2992

4. 1동의 건물의 표시

당진시 H에 있는 I건물

[도로명 주소] 당진시 J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9층 업무시설

지4 주차장, 기계실 517.00㎡

지3, 지2 각 주차장 1,424.01㎡

지1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1,424.01㎡

1층 내지 4층 각 상점 1,283.95㎡

5층 내지 8층 각 사무소 1,283.95㎡

9층 치과병원 1,058.83㎡

옥탑1 옥탑, 엘리베이터기계실 107.8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66.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당진시 H 대 2,18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206분의 33.6206

5. 1동의 건물의 표시

당진시 H에 있는 I건물

[도로명 주소] 당진시 J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9층 업무시설

지4 주차장, 기계실 517.00㎡

지3, 지2 각 주차장 1,424.01㎡

지1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1,424.01㎡

1층 내지 4층 각 상점 1,283.95㎡

5층 내지 8층 각 사무소 1,283.95㎡

9층 치과병원 1,058.83㎡

옥탑1 옥탑, 엘리베이터기계실 107.8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의원 249.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당진시 H 대 2,18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206분의 64.754. 끝.

1)채무자 회생법 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 민법 제406조 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59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 제3항 및 제4항 중 "채무자"는 이를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본다.

2)이 사건 소제기가 소급하여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4)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2. A과 피고 D 사이에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3. 12. 접수 제11764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고, 위 지원 2013. 6. 4. 접수 제29286호로 원고 명의의 위 위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위 지원 2013. 6. 4.자 2013카단1722 가처분결정, 피보전권리 :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금지사항 :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등기가 경료된 후, 위 지원 2013. 6. 26. 접수 제34206호로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의 부기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 B를 전득자라고 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로 삼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본안에 관한 다른 부분과 함께 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이 사건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전부를 제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